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3. 11. 2.(목) ~ 11. 15.(수) <14일간>

3. 대상기관 : 53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4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가족센터(舊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동부아동복지센터(舊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46개)
	<p>○ 복지정책실 소관(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시립고덕양로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광역),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은평의마을,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p>○ 시민건강국 소관(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동남)센터,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서남)센터,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원장	국민의힘	강석주	수석전문위원 : 주병준 행정 5 급 : 황동연 전문위원 : 김소은
부위원장	국민의힘	유만희	행정 6 급 : 박현우 행정 7 급 : 김나운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행정 7 급 : 손은영 사무운영7급 : 심선영
위원	국민의힘	김영욱	입법조사관 : 이정화 입법조사관 : 이윤진
”	국민의힘	윤영희	입법조사관 : 우현재 입법조사관 : 도미화
”	국민의힘	최호정	입법조사관 : 김종훈 입법조사관 : 신현대
”	국민의힘	황유정	정책지원관 : 박서영 정책지원관 : 박지연
”	더불어민주당	김경	정책지원관 : 백순정 정책지원관 : 김지혜
”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정책지원관 : 박진수 정책지원관 : 박연희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2.(목) ~11.3.(금)	행정사무감사 준비		
11.6(월) 10:00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원회 회의실	
11.7(화) 10:00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 북부여성발전센터 -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 여성보호센터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가족센터(舊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 동부아동복지센터(舊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위원회 회의실	
11.8(수)	감사결과 자료정리		
11.9(목)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위원회 회의실	
11.10(금) 10:00	<복지 관련 기관> - 시립고덕양로원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광역)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 시립평화로운집 -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시립은평의마을 -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11.13(월) 10:00	<p><시민건강국></p> <p><보건환경연구원></p>	위원회 회의실	
11.14(화)	<p><서울의료원></p> <p><직영 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p><위탁 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p><건강 관련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동남)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동북)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서남)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 정신건강통합센터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결과 자료정리 	위원회 회의실	
11.15(수)	감사결과 자료정리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현황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 정책실 및 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여성 사회참여 증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저출생 해소, 보육 및 돌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아동·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성평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재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재단 및 여성능력개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관련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류, 여성복지 증진, 여성 관련 시설 연계, 여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여성일자리 활성화 및 일자리기관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실 및 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시민건강국 및 산하사업소 · 위탁시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전염병 예방·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시민 보건 수준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 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서 울 의 료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위탁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가. 2022. 11월 ~ 2023.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각종 기금 포함)
- 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각종 기금 포함)
- 라. 2022. 11월 ~ 2023. 10월까지 처리한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 마. 2022. 11월 ~ 2023. 10월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각급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 바.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사.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아. 보건복지위원회 요구 자료
- 자.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8.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2」 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해당 감사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2023. 9. 25.(월)까지 제출
- 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의사담당관 경유)에게 2023.10.4(수)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감사 개시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
 - 행정사무감사 전체 피감기관의 기관(시설)장
 -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운영 법인 대표 : 선정 중
 -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를 적용함
- (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예시)

-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 선서 : 선서문 별첨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업무현황 보고·청취
-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확인, 서류제출 등의 요구 및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침

- (1) 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 (3)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3.12.8.(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 (5) 본회의 의결

-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감사 결과 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